

행복미소의 집 운영규정의 개요

1. 개요

시 설 명	행복미소의 집
사업장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136, 113동 301호 (백석동,현대아파트)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시설급여
대 표 자	김성자
시 설 장	민요
시설 규모	150.37㎡
정 원/ 현원	정원 9명 / 현원 9명 (2025/02/03기준)
장기요양기관번호	1-44130-00223
지정/신고일자	2012-01-17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비즈앤안전파트너 2021.12.22.~2026.12.22
화재보험	KB손해보험(주)/KB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2021.11.12.~2026.11.12

2. 종사자 근무체계

1) 전체 인력 근무현황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축탁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1명			1명	1명		4명				

2) 일일 종사자 인력현황 : 일일 근무는 근무표에 따름

구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물리치료사	사무원
평일	주간	1명		1명	3명					
	야간				1명					
휴일	주간	1명		1명	3명					
	야간				1명					

3. 시설기준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목욕실	세탁실
○	○			○		○	○		○	

4. 입소 항목별 비용

등급	공단급여수가			비급여수가			
	1등급	2등급	3,4등급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일반	72,480원	67,250원	62,000원	3,600 /1식	500원/1일	없음	없음

※식재료비는 1일 3식으로 청구, 간식비는 1일 기준으로 청구하며 외출, 외박시 제외함.

5. 입소대상

: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8조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중 다음과 같은 자를 입소 대상으로 함.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후 장기요양등급 4등급 이상자로서 치매 및 중풍 진단을 받은 어르신 및 심신허약 어르신으로 신체적, 경제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 1) 치매 및 중풍 어르신, 노인성 질환을 가진 심신허약 어르신 및 관외지역 장기요양등급 4등급 이상
- 2)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등급 4등급 이상인 어르신
- 3) 어르신 및 수급권자 어르신, 일반대상 어르신으로 시설급여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6. 입소계약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1)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7. 시설물 주의사항

-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할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8. 의료서비스 이용절차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시 처리절차

-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시 처리절차

- 가. 응급상황 발생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시 처리절차

-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